

 국토교통부		보도설명자료	
		배포일시	2019. 12. 17(화) / 총 1매(본문1)
담당 부서	항공운항과	담당자	· 과장 오성운, 사무관 민병우, 주무관 조동현 ☎ (044) 201-4268, 4314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조종실내에서 조종사 등 흡연을 금지하고, 안전감독도 강화하겠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KBS, '19.12.16(월)) >

◆ 조종석 창문 열고 빼꼼 ... “ 조종사 기내 흡연 심각 ”(KBS)

- 이륙전 유도로 이동시에 창문을 열어 놓고 피우기도...
- 흡연시 승객은 천만원, 조종사는 0 원

- 국토교통부에서는, 올해 10월 기내에서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항공사 운항규정에 반영하고 자체 처벌 제도를 운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.
- 또한, 기내에서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흡연금지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한 항공안전법 개정안(박홍근 의원 발의, '19.10.31)이 제출 되어 있습니다.
 - 주요내용은 승무원에 대해 기내 흡연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기내 흡연 시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,
 - 항공사의 기내 흡연금지에 대한 관리·감독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입니다.
- 국토교통부는 법률 개정 전까지 항공사 운항규정에서 정한 흡연 금지가 준수 될 수 있도록 조종실 탑승점검 및 불시점검을 강화 하겠습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민병우 사무관(☎044-201-426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